<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 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u>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689 최초등록일 :2019년 07월 15일 최종등록일 :2023년 10월 25일

http://www.monchouchou-kr.com/ 대표 이메일 주소 juyoo@monchouchou-kr.com

[몽슈슈]

[Monchouchou]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몬쉘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 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식회사 몬쉘코리아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 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서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싸하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맹 본 부 의 주 된 사 무 소 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706호 (성수동2가, 영동테크노타워)

가 맹 본 부 의 대 표 전 화 번 호 : 02-2088-5909 가 맹 본 부 의 대 표 팩 스 번 호 : 02-6205-0299

가 맹 사 업 담 당 부 서 및 전 화 번 호 : 사업본부 영업부문 (02-2088-590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2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3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1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6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38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41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Mon chouchou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 (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면 가맹본부에서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 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몽슈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706호 (성수동2가, 영동테크노타워)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일	1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몬쉘코리아	2013년 05월 20년	일	2013년 05월 20일	김 수 근	02-2088-5909	02-6205-0299	
	법인등록번호		110111-5138444	사업자등록번호	120-8	37-9846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 상호	영업표지		주 소	
	Alm 9	몽슈슈	서울시 성동구 아차선	<u></u> 산로 103, 706호 (성수동	2가, 영동테크노타워)
임원	김수근	Mon	대표자	대표번호	대표팩스
_ A &		Chouchou	김수근	02-6205-3574	02-6205-0299
20			/1/1/		
- 50			대표자	대표번호	대표팩스
	A Part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 (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cdot 합병 (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cdot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을 인수함	해당사항 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 사업 일부를 인도 함	해당사항 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 본부를 합병함	해당사항 없음				

※ 기재기간 : 바로 전 3년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카페 드 몽슈슈 또는 카페 몽슈슈 또는 Monchouchou	
상 호	카페 드 몽슈슈 ㅇㅇ점 또는 카페 몽슈슈 ㅇㅇ점 (ㅇㅇ : 지역 또는 건물명, 백화점 등 대표명칭을 사용)	
상표 (서비스표)	Mon Shah,	상표권등록번호 : 41-0294897-0000 : 45-0033779-0000
광 고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사항 없음	P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7,380,897	2,615,257	4,765,641	11,717,762	1,751,806	1,642,348
2022년	7,681,407	2,419,803	5,261,603	12,167,906	1,515,442	1,195,559
2023년	7,197,324	2,376,808	4,820,516	11,168,277	928,407	766,870

그 근거자료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 사업연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이력이 없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 공급한 물품의 매출액을 표시하였습니다.
 - 공급한 물품은 롤케이크, 기타 디저트, 일반소모품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2019년 개시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가맹사업 관련)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사업경력 현 직 위			
교단에도		2411	기간	직위	담당업무
			2017.11.09 ~ 2020.11.09	대표이사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수근	대표이사	2020.11.09 ~ 현재		
			2020.03.30 ~ 현재	사내이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미화	사내이사			
			2017.11.09 ~ 2020.11.09	사외이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종원	사외이사	2020.11.09 ~ 현재		
3//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	직원수 (명)	
시 Έ	상 근	비 상 근	역전구(경)
2023년 12월 31일	1명	2명	52명

직원수는 가맹본부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로 전 사업연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월급여간이세율 (A01)** 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근거자료로 제출합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 / 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사항 없음				
에 증시 중 따름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최종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몽슈슈	Mon	최초출원 : 2009-08-12	45-2009-0002934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2031-02-09
(상표권)	- Crantinui	최종등록 : 2011-01-27	45-0033779-0000	(1) 전 월고니어	(2031-02-09)
몽슈슈		최초출원 : 2013-10-11	41-2013-0038745	(조) 무쉐 그 기이	2024-07-25
(상표권)	몽슈슈	최종등록 : 2014-07-14	41-0294897-0000	㈜몬쉘코리아	(2024-07-2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 (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검색서비스 (http://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점을 시작한 날 : 2019년 01월 02일

2. 주식회사 몬쉘코리아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몽슈슈	김수근	2019.01.02 ~ 현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03, 706호

3. 주식회사 몬쉘코리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몽슈슈	대분류	소분류 (주요제품)	
	기타 외식	롤케잌 류 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몽슈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2	4	28	32	6	27	35	5	30
서울	11	1	12	13	2	11	14	2	12

부산 2 2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1 1 1										
인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부산	2		2	3		3	3		3
광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대구	2		2	1		1	1		1
대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인천	1		1	1		1	2		2
울산 1 1 1 1 1 1 세종 3 8 11 2 9 장원 3 8 11 2 9 중북 3 8 11 1	광주	1		1	1		1	1		1
세종 경기 10 2 8 11 3 8 11 2 9 장원 장보 전북 1 1 1 1 1 1 1 1 1 전남 경북	대전	1		1	1		1	1		1
경기 10 2 8 11 3 8 11 2 9 강원 3 8 11 2 9 충북 3 8 11 2 9 충남 3 1	울산	1		1	1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충남 1 전북 1 전북 1 건남 1 경북 3 경남 3	경기	10	2	8	11	3	8	11	2	9
충남 1 1 1 1 1 1 전부 1 1 1 1 1 1 전남 3 4	강원									
전북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충북									
전남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충남									
경북 경남 경남 기계	전북	1	1		1	1		1	1	
경남	전남									
	경북							_		
제즈	경남	_						_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몽슈슈]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4	0	0	0	1	4
2022년	4	2	0	0	0	6
2023년	6	1	2	0	0	5

6. [몽슈슈]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몽슈슈]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사항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말							
지역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기명심구	연간 평균	3.3m²당	상한	3.3m²당	하한	3.3m²당	
전체	5	269,452	8,328	423,608	20,372	118,292	2,953	
서울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가맹점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몽슈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몽슈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5	847.2 일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9. 가맹지역본부 (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몽슈슈]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 지역	상호/명칭	주 소				
해당사항 없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계약기간	가맹점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운영매장은 12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매출액 산정

[※] 영업일 6개월 미만 가맹점 1곳 산정제외.

^{*} 평균 영업기간 :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 기준 ("일"로 표시)

10.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몽슈슈]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17] 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 (단위 : 천원, 부가시	네 미포함)	비고
TE		기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포
	합계		8,335	8,335		
	소계		8,335	8,335		
광고	비공개		8,335	8,335		
판촉	소계					
		_				

- ※ 광고 : 구체적인 행사와 관계없이 회사 이미지 제고, 가맹점 모집, 신상품 출시 홍보 등을 위한 홍보활동
- ※ 판촉 : 개별 행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홍보 활동으로 월간 행사 외에도 명절, Day이벤트 등
- ※ 광고의 경우 매체명, 판촉의 경우 행사명을 기재하였습니다.

11.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성수역종합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일 10길 32, 1층	02-498-089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 받아 설치한 후 "가맹금예치제도"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몬쉘코리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별도 안내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NAME OF THE PARTY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사항 없음	
보험계약자	해당사항 없음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해당사항 없음	0011
보험기간	해당사항 없음	
보험금액	해당사항 없음	WIL
보장범위	해당사항 없음	
지급조건	해당사항 없음	
보험금의 수령절차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증권의 본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0]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 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법원명	판결(선고) 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사항 없음						

3. 형 (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법원	선고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내용
해당사항 없음			1011	MA	M11
			WU	JU	JIA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몽슈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111 -	선권, 구기제 조임)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 요된 실제 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 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 후 가입비로 전 환)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VIL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I V	- (Y3			
1	N 53	o 9/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없음)

			, , ,	11.66,171/11 861/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	
총계	3,000			
보증금 (현금)	3,000	계약 체결 후 20 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 품 등의 대금 (원·부 재료 대금 포함)의 3 배 이내

보증금이 현금일 경우 가맹금 예치기관을 통해서 예치, 이행증권일 경우 지급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700
가입비 (부가세 포함)	5,500
교육비 (부가세 포함)	2,200
보증금 (현금, 부가세 없음)	3,000

- 1.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 + 나를 합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함)

- 2.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 의 액수는 위의 표에 기재하였습니다.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3.3m²당 금액			•
총계		74,054 ~				
<i>-</i>		98,636				
인테리어/간판	협력업체	55,000 ~	2667 4664			치ᄉ 1፫명 기즈
/의탁자		69,960	3,667 ~ 4,664			최소 15평 기준
ᄌ바시기	기매비비	1,747 ~				교다 사저 보기
주방식기 기	가맹본부	2,200				평당 산정 불가
저기비표	기매비비	13,200 ~				현다 사저 보기
전자비품	가맹본부	18,436				평당 산정 불가
 초도물품	가맹본부	1,126 ~				평당 산정 불가
<u> </u>	17で亡士	1,650				명찰,디스플레이용
ᅔᄃᄊᄑ	7L매 보 ㅂ	1,551 ~				평당 산정 불가
초도상품	가맹본부	3,632				별도 첨부
нлл	기매비비	1100 2202				평당 산정 불가
부자재	가맹본부	1,100 ~ 2,203				별도 첨부
017117	기매비비	330 ~				평당 산정 불가
원재료 	가맹본부	554				별도 첨부

별도금액	자점매입 및 가맹본부	POS/커피머신/기타용품(주방,사무,청소용품)/ 철거/ 화장실/감리비/설계도면 제공비 등	매장상황 및 점주선 택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 금액
별도금액	가맹본부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 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 지정업체 외 직접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진행 시 인테리어 공사비 외 설계도면 제공비를 설계제공업체(가맹본부 지정업체)에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감리대가로 당사 지정여부와 관련없이 3.3m² 기준으로 30만원(부가세제외)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구분: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요구 또는 권장하고 있으며,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 (예:인테리어자체 시공 시 가맹본부에 감리비 등 지급)해야 하며, 그 내용을 위 표에 기재하였습니다.
- 2. 지급대상: 가맹본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업체를 지정 (계열사 포함)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구별하였으며, 업체의 수가 많을 경우 요약하여 실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정'이라 함은 업체 소개, 유도, 제한 등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3. 금액: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4. 면적: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의 경우 면적 3.3m2당 소요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5. 비고 :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mark>기재하였고, 필요한 경우</mark> 별도의 추가 설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영업본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T. 02-2088-5909)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 1.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정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2. 선정까지의 절차를 나타내되, 가맹희망자와의 협의 여부, 가맹본부가 정한 입지를 가맹희망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1. 가맹점사업자나 종업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맺거나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몽슈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도 첨부 [2]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상기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있습니다.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가맹금		총액의 10%	15%	15%	10%
납부일		계약일+1일	계약일+15일	계약일+1개월	계약일+2개월
비고					

- * 가맹금은 최초가맹금으로 가입비 + 교육비 + 보증금을 합계이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분할납부는 사전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18)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판촉 분담금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220 (점포 단위 당)	별도 통지			정기교육 생략 가능
영업표지 변경 에 따른 제반비 용	해당사항 없음	ĵs .				
시설,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10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M	11 () (
재고관리비용	해당사항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사항 없음	9				
POS사용료	가맹본부		CIII			
영업표지사용 료	가맹본부	매출액의 5% 이내	매월 정산일까지			The Bo
지연이자	가맹본부					

- 1. 구분 :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 2. 지급대상: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관계자, 계열사 포함)를 구별하되 업체의 수가 많을 경우 요약하여서 실명 기재하였습니다.
- 3. 금액: 정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4. 지급기한 :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 5. 반환조건 : 영업 표지 변경 등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 중에 간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경우, 변경비용의 분담 기준을 기재하였습니다.
- 6.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지급의무(월 계속 가맹금, 원·부재료 상품대금, 지체 배상금, 위약벌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 (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 6개월 미만 가맹점 1곳 산정제외.

- 1. 구분 : 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되, 가맹본부가 자체 공장 등에서 직접 제조하 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관계로 차액가맹금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주문생산방식 (OEM)으로 제작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재합니다.)
- 2. 내용: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추정치임을 밝히고, 표 아래에 계산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 3.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을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4. 가맹점 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이 가 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을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 (3) 가맹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 (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 전에 계약 해지		추가 교육 필요 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결정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점포 이전 합의 시

[당사는 계약 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혐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 구분 :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 2. 금액 : 정액으로 금액이 특정되면 그 금액을 정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다.
- 3. 반환조건 :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란은 가맹본부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쓰고 신규 계약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4. 추가교육비 :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최초 계약 시 수료하는 교육의 양과 질에 비하여 추가 교육의 수준이 다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 책정 등 가맹본부의 교육방침을 기재하였습니다.
- 5. 점포이전비 : 가맹본부의 필요에 의하여 점포 이전할 경우, 그 이전 사유를 감안하여 그 비용 분담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 (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 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깨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몽슈슈] 운영권을 다은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식회사 몬쉘코리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 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귀하의 잔여계약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3.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당사에 가맹비 (550만원,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만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 (300만원, 부가세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 4. 양수인이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새로운 갱신요구기간을 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비 (550만원,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만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 (300만원, 부가세 없음)을 납입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5.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 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 (10% ~ 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항목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지나치게 사맹점사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률자문을 거친 후 작성하였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몽슈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① 상품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일 때, 원 · 부재료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일 때로 구분합니다.
- ② 품목이 많은 경우 "외 몇 종" 등으로 줄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거래형태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③ 상품의 규격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④ 강제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⑤ 거래 상대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⑥ 각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O/X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체생산품목의 경우 "자체"라고 기재하시고, 표 아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별 시행령 관련 조문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 (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 \cdot 용역 \cdot 설비 \cdot 상품 \cdot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다)

(라)

- 1. 주요품목: (가)목에서 기재한 구입요구품목 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0개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 중 500개의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되, 그 50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금의 합이 높은 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2. 공급가격: 직전 사업연도 1년 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하였습니다.
-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 : 자동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기재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몽슈슈]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 <mark>없</mark> 음	4			7
17	50	1/0/00	11 00	

- 1. 강제 : 거래를 강제한 품목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2. 명칭 :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다른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 명도 표시하였습니다.
- 3.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다수일 경우 대표적인 품목 외 몇 종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4.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경제적 : (예 : 매출액, 임대수익, 인력지원 인원수 등)를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 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였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몽슈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별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			

- 1. 상품ㆍ용역 : 소비자 판매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설비, 장비, 정착물 등도 포함합니다.
- 2. 경제적 이익의 내용 : 대가를 산정하는 기분이 있는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 3. 금액 :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4. 비고 : 가맹희망자가 각 대가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였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추가하였습니다.
 - (2) 당사가 [몽슈슈] 가맹점사업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 : 천·	원, 부가세 별도)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About Of)·				
	17.53	z-0. /	71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 만을 판매하여야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쇼핀_도지마		 1회 위반 : 구두 경고	
쇼핀_치즈케이크	품목은 판매할 수 없음 📗	2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쇼핀_티라미수		3회 이상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 (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별 시행령 관련 조문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건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별첨 3)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의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별 시행령 관련 조문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입장 남자	가맹본부	계열회사	
기타 외식 / 롤케이크 류 외	몽슈슈	해당사항 없음	

- 1. 동일한 업종 범위 :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범위를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 2.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영업표지의 종류를 가맹본부와 계열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as I	
	설정 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500m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계약체결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 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 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 또는 유동인 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3.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 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 동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 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몽슈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 되는지 여부

[당사는 [몽슈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사항 없음			

1. 구분 : 유통채녈의 종류를 기재하였습니다.

2. 취급품목 : 해당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모든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

3. 가맹점과의 구분 : 해당 유통채널이 본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과 구분되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유통업체	2차유통업체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인 주식회사 컬리			도지마롤_홀		
				도지마롤_하프		
온라인			http://www.kurly.com/	떠먹는 치즈케이크	판매품목제한	
				몬테카를로_5개입		
				몬테카를로_10개입		
				도지마롤_홀		
Q =L0I	온라인 쿠팡㈜		https://www.coupang.com/	도지마롤_하프	· 판매품목제한	
근니간			nttps://www.coupang.com/	떠먹는 치즈케이크] 한배품국제인 	
	a Maria	AS .		기타 제품		
온라인	신세계백화점	㈜에스에스 지닷컴	http://www.ssg.com	도지마롤_홀 외 31종	모바일교환 쿠폰/ 판매품목제한	
온라인	㈜현대백화점	현대e슈퍼	https://esuper.ehyundai.com	롤쿠키S 외 10종	모바일교환 쿠폰	
	㈜현대백화점	더현대닷컴	https://www.thehyundai.com			
온라인	㈜현대백화점	Hmall	https://www.hyundaihmall.com	· 롤쿠키S 외 10종	판매품목제한	
드닉년	㈜현대백화점	GSshop	http://www.gsshop.com	로 (기) 시 100	. 단체 삼 국 AN 전	
	㈜현대백화점	현대투홈	https://tohome.thehyundai.com	N	a-a-	

- 1. 구분 : 온라인몰,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유통채널의 성격을 기재하였습니다.
- 2. 유통업체명 : 유통업체의 상호를 기재하였습니다.
- 3. 취급품목 : 해당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모든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
- 4. 가맹점과의 구분 : 해당 유통채널이 본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과 구분되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8.89%	91.11%	0.00%	100.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00%	0.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몽슈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0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0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문 시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A PARTO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D-10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D 00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1E9L0H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 (00) 014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	
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 (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01항
o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01항
o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7조 01항
o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01항
o [몽슈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7조 01항
o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7조 01항
	A A A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 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8조 0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제38조 0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8조 0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38조 0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02항
o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제38조 0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8조 0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제38조 02항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8조 0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수정 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회신
-> 수정 완료	회신이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조건	환매절차	비고
o 가맹점에게 계약서 38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o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o 가맹점 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환매 여부 통지	문의 : 유통본부 (02-6205-5909)

1. 환매조건 : 환매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2. 환매절차 :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3. 비고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외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앙도 절차	비고
o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 준을 준수할 것 o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영업본부 (02-2088-5909)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용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양도가능조건 : 양도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절차 :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기재하였습니다.

3. 비고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외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 의무	(2) 절차 참고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 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1. 구분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운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 계약 외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2. 가능여부(조건): 1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인정될 겨우 그 조건을 기재하였습니다.
- 3. 이전범위: 상속인(대리인, 수탁인 등 포함)에게 이전되는 가맹점운영권의 범위를 기재하였습니다.
- 4. 절차 :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기재하였습니다.
- 5. 기타 의무사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수에 따른 교육비 등이 있으면 기재하였습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귀하가 [몽슈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1. 경업금지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2. 경업허가 절차 :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기재하였습니다.
- 3. 비고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외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 경업금지의 범위를 동일업종이 아니라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몽슈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o 10:00 ~ 22:00	365일 연중 무휴 영업을 원칙으로 하며,	
o 영업장소가 위치한 건물 등 영업시간	영업장소가 위치한 건물 등 영업시간 통	문의 : 영업본부
통제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기타 통	제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기타 통제	(02-2088-5909)
제된 영업일수를 적용한다.	된 영업일수를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의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1. 권장 종업원수: 가맹본부가 종업원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기재하였습니다.
- 2. 직접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을 확인 후 담당부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3. 대체가능 인력: 가맹점사업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직접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가능 인력과 그 절차를 기재하였습니다
- 4. 비고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state of the s		
관리·감독 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부서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02주 01회	유통본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 표 작성 -> 완료	02주 01회	유통본부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 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02주 01회	유통본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1. 관리·감독하는 항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항목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2. 담당부서 : 관리·감독을 실제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기재하였습니다.
- 3. 비고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몽슈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현재는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 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브다 저희	비고
	97.94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미프
광고	인터넷 광고	50	50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판촉 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독자적인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TE	유고영식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교시	
광고	가맹점 선택	0	100		
27	500 5		0011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금 (8,000,000)원을 위약금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o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7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MI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WIA.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 가맹금 예치	D-29 (1일)	
점포실측 / 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 (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 (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의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1. 소요기간 : 소요기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2. 소요비용은 앞서 기재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용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가맹본부	지급절차	비용부담	비고	
0-20 12 111	부담비용항목	부담비용비율	1021	제외사유		
o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o 간판교체비용 o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추가 공사를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환경개선 : 40%	o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에게 지 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 도의 합의가 있는 경 우 1년의 범위내에 서 분할지급 가능) o 가맹점사업자가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이 점포환경개성일로성일로이 나명이 가명사용보임사유약로 이 약의여기·영	

	가맹본부 또는 가맹	업양도
	본부가 지정한 자를	포함)되
	통하여 점포환경개	는 경우
	선을 한 경우에는 점	가맹본
	포환경개선이 끝난	부 부담
	날부터 90일 이내에	액 중 잔
	가맹본부 부담액을	여기간
	지급	에 비례
	<분할지급절차>	하는 부
	ㅇ 가맹점사업자의	담액은
	비용 청구(공사계약	지급하
	서 등 공사비용을 증	지 아니
	빙할 수 있는 서류	하거나
	첨부)->3차에 걸쳐	이미 지
	가맹본부 부담액을	급한 경
	분할 지급	우에는
	(1차 : 청구일로부터	환수 가
	90일 이내, 총 부담	능
	액의 30%, 2차 : 1차	
A CO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262.0	30%, 3차 : 2차 지급	
A 2000 1 29 7 17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금액	비고
비품	가맹점 오픈 시 판촉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			지원금액
	물품 지원(제품, 상품 일	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오픈 시		(=납품가
무상지원	부)	차등 지원			기준)

^{* 2023}년 기준 가맹본부는 가맹점 오픈 시 판촉 지원으로 "쁘띠도지마롤" 30EA, "원두" 10봉을 무상지원하며, 지원금액은 2023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쁘띠도지마롤 : 30EA * 12,400 = 372,000

- 원두 : 10봉 * 22,727 = 227,273

3. 경영활동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 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 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0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영업본부 (02-2088-5909)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 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 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07]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 함된 통장의 경영지도비용 을 초과한 부 분에 한함)	문의 : 영업본부 (02-2088-5909)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해 경영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업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몽슈슈]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 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작성하되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③ 지원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④ 지원내용이 정액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금액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

을 알 수 있도록 상한선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몽슈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몽슈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비고
신규교육	총 4일 (1일당 8시간)	2,0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교육	1일 (8시간)	100 ~ 300	필요시 이행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 20 조에 따라 4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 20 조에 따라 4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B1F
2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서울 중구 소공로 63 신관 B1F
3	경기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 신세계백화점 B1F
4	대구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대구 동구 동부로 149 B1F
5	광주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B1F
6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B1F
7	서울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9 센세계백화점 B1F
8	대전	신세계백화점 Art&Science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신세계엑스포점 지하1층 (도룡동)
9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5 B1F
10	경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B1F
11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 B1F
12	경기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B1F
13	서울	현대백화점 미아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 현대백화점 미아점 B1F
14	서울	현대백화점 천호점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 B2F
15	경기	현대백화점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57
16	울산	현대백화점 울산점	울산 남구 삼산로 261 현대백화점 울산점 B1F
17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18	경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1점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50 1F
19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백화점 노원점 B1F
20	서울	롯데백화점 명동본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B1F
21	경기	롯데백화점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60 롯데백화점 동탄점(오산동)
22	부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B1F
23	경기	AK플라자 수원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B1F
24	경기	AK플라자 분당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B1F
25	서울	카페 GFC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6	서울	카페 연남점	서울 마포구 동교로51길 73, B1~3F

27	부산	카페 초량역점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흥국생명보험㈜ 부산사옥 1층(초량동)
28	인천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남로 35
29	경기	카페 정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2 엠코헤리츠 4단지 401동 103호
30	경기	카페 엘포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5 엘포트몰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11:2/112)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 : : - :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99.64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
233,040	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였고,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nouchou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유통본부 (02-6205-5909)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u>http://www.monchouchou-kr.com/</u>)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u>http://franchise.ftc.go.kr</u>)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주식회사 몬쉘코리아 재무제표 (21년 ~ 23년 표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 메뉴 및 판매가

구분	제품명	표준	표준	비고
		소비자판매가	가맹공급가	
완제품	(낱)로즈휘낭시에_그린티_냉동	3,300	1,683	
완제품	(낱)로즈휘낭시에_쇼콜라_냉동	3,300	1,683	
완제품	(낱)로즈휘낭시에_스트로베리_냉동	3,300	1,683	
완제품	(낱)로즈휘낭시에_얼그레이_냉동	3,300	1,683	
완제품	(낱)로즈휘낭시에_플레인_냉동	3,300	1,683	
완제품	(낱)로즈휘낭시에_헤이즐넛_냉동	3,300	1,683	
완제품	몬테카를로깔루아밀크_냉동	3,500	1,980	
완제품	몬테카를로오리지널_냉동	3,500	1,980	
완제품	몬테카를로후람보와즈_냉동	3,500	1,980	
완제품	밀크티	5,000	2,750	
완제품	망고코코	5,300	3,410	
완제품	푸딩	5,300	2,970	
완제품	해피파우치_플레인	5,300	3,410	MI
완제품	후레즈푸딩	5,300	3,410	VIII.
완제품	도지마롤_컷C(냉동B2R전용)	5,800	3,520	
완제품	파르페쇼콜라	5,800	3,740	
완제품	파르페후르츠	5,800	3,740	
완제품	고구마롤_컷_냉동	6,000	3,740	
완제품	고구마롤_컷_냉장	6,000	3,740	
완제품	모카쇼콜라롤_컷_냉동	6,000	3,850	
완제품	바닐라롤_컷_냉동	6,000	3,850	
완제품	바닐라롤_컷_냉장	6,000	3,850	
완제품	블루베리요거트롤_컷	6,000	3,850	

완제품	쇼핀_도지마(냉동)	6,000	3,300
완제품	쇼핀_치즈케이크(냉동)	6,000	3,630
완제품	쇼핀_티라미수(냉동)	6,000	3,630
완제품	아망드쇼콜라롤_컷_냉동	6,000	3,850
완제품	쿠키앤크림롤_컷_냉동	6,000	3,850
완제품	프린스롤_컷_냉동	6,000	3,850
완제품	피칸시나몬롤_컷	6,000	3,850
완제품	피칸시나몬롤_컷_냉동	6,000	3,850
완제품	말차롤_컷_냉장	6,200	3,960
완제품	요거베리롤_컷	6,300	4,070
완제품	후르츠롤_컷	6,300	4,070
완제품	자몽단쥬_컷	7,500	4,840
완제품	후르츠단쥬_컷	7,500	4,840
완제품	몬테카를로깔루아밀크_3개입_냉동	10,500	6,160
완제품	몬테카를로오리지널_3개입_냉동	10,500	6,160
완제품	몬테카를로후람보와즈_3개입_냉동	10,500	6,160
완제품	로즈휘낭시에4개입_냉동	14,000	7,700
완제품	쿠키샌드XS	14,000	8,690
완제품	떠먹는도지마_냉동	14,500	8,470
완제품	도지마롤_하프C(냉동B2R전용)	15,000	9,130
완제품	떠먹는몽블랑_냉동	15,000	9,570
완제품	떠먹는후르츠몽블랑_냉동	15,000	9,570
완제품	고구마롤_하프_냉동	15,500	9,680
완제품	고구마롤_하프_냉장	15,500	9,680
완제품	모카쇼콜라롤_하프_냉동	15,500	9,350
완제품	바닐라롤_하프_냉동	15,500	9,350

완제품	바닐라롤_하프_냉장	15,500	9,350
			· ·
완제품	블루베리요거트롤_하프	15,500	9,460
완제품	아망드쇼콜라롤_하프_냉동	15,500	9,350
완제품	치즈롤_하프_냉동	15,500	8,580
완제품	쿠키앤크림롤_하프_냉동	15,500	9,350
완제품	프린스롤_하프_냉동	15,500	9,350
완제품	피칸시나몬롤_하프	15,500	9,350
완제품	피칸시나몬롤_하프_냉동	15,500	9,350
완제품	떠먹는치즈케이크_냉동	16,000	10,340
완제품	말차롤_하프_냉장	16,000	10,340
완제품	요거베리롤_하프	16,000	9,790
완제품	후르츠롤_하프	16,000	9,790
완제품	이치고롤_하프	16,500	10,670
완제품	몬테카를로깔루아밀크_5개입_냉동	17,500	10,450
완제품	몬테카를로오리지널_5개입_냉동	17,500	10,450
완제품	몬테카를로후람보와즈_5개입_냉동	17,500	10,450
완제품	떠먹는티라미수_냉동	18,000	10,780
완제품	마카롱세트_5개입_냉동	18,000	10,780
완제품	어쏘트먼트프리미엄_6개입	19,500	11,660
완제품	프린스데코롤_하프	19,500	12,650
완제품	데코레이션롤_하프(예약전용)	21,000	13,640
완제품	로즈휘낭시에6개입_냉동	21,000	11,550
완제품	바닐라쿠키샌드 S	21,000	13,090
완제품	베이크드치즈케이크	22,000	13,420
완제품	베이크드치즈케이크_냉동	22,000	13,420
완제품	쁘띠도지마롤+(냉동B2R전용)	24,000	13,640
		1	1

완제품	후르츠단쥬_M	24,000	15,620
완제품	쁘띠모카쇼콜라롤(냉동B2R전용)	25,000	14,190
완제품	쁘띠베리요거롤	25,000	14,190
완제품	쁘띠베리요거롤(냉동B2R전용)	25,000	14,190
완제품	쁘띠블루베리롤(냉동B2R전용)	25,000	14,190
완제품	쁘띠아망드쇼콜라롤_냉동	25,000	14,190
완제품	쁘띠아망드쇼콜라롤_냉장	25,000	14,190
완제품	쁘띠프린스롤_냉동	25,000	14,190
완제품	도지마롤_홀C(냉동B2R전용)	25,500	15,290
완제품	롤쿠키세트 S	26,000	14,410
완제품	고구마롤_홀_냉동	26,500	16,500
완제품	고구마롤_홀_냉장	26,500	16,500
완제품	모카쇼콜라롤_홀_냉동	26,500	15,950
완제품	바닐라롤_홀_냉동(매장발주불가)	26,500	15,950
완제품	바닐라롤_홀_냉장	26,500	15,950
완제품	블루베리요거트롤_홀	26,500	16,170
완제품	생초콜렛	26,500	15,510
완제품	생초콜렛_냉동	26,500	15,510
완제품	아망드쇼콜라롤_홀_냉동	26,500	15,950
완제품	쿠키앤크림롤_홀_냉동	26,500	15,950
완제품	프린스롤_홀_냉동	26,500	15,950
완제품	피칸시나몬롤_홀	26,500	15,950
완제품	피칸시나몬롤_홀_냉동	26,500	15,950
완제품	말차롤_홀_냉장	27,000	17,490
완제품	요거베리롤_홀	27,000	16,500
완제품	후르츠롤_홀	27,000	16,500
L		1	l

		1	T T
완제품	이치고롤_홀	27,500	17,820
완제품	로즈휘낭시에9개입_냉동	30,000	16,500
완제품	쁘띠데코_4개입	31,000	20,130
완제품	슈슈벨벳_M_냉동	31,000	18,590
완제품	아이망고유_M	31,000	18,590
완제품	아이블루베리유_M	31,000	18,590
완제품	포레누아_M	31,000	18,480
완제품	요거트블랑_1호	32,000	19,250
완제품	후르츠단쥬_1호	34,000	20,900
완제품	몬테카를로_1호	35,000	20,900
완제품	몬테카를로깔루아밀크_10개입_냉동	35,000	20,900
완제품	몬테카를로오리지널_10개입_냉동	35,000	20,900
완제품	몬테카를로후람보와즈_10개입_냉동	35,000	20,900
완제품	데코레이션롤_홀(예약전용)	36,000	23,320
완제품	롤온해피니스_M	36,000	21,560
완제품	어쏘트먼트프리미엄_12개입	36,000	21,560
완제품	후레즈단쥬_1호	37,000	22,550
완제품	후레즈티아라_M	37,000	23,980
완제품	블랑드쉬폰_1호	38,000	24,310
완제품	블러썸_1호	38,000	24,695
완제품	로즈휘낭시에12개입_냉동	39,000	21,450
완제품	슈슈멜론	39,000	25,300
완제품	후르츠가든	41,000	26,620
완제품	스트로베리가든_1호(예약전용)	42,000	25,190
완제품	쿠키샌드 M	43,000	25,630
완제품	후르츠단쥬_2호 (예약전용)	44,000	26,620
		l	I

완제품	아소트세트_M-Ⅱ	45,000	27,940
완제품	후레즈티아라_1호	45,000	29,150
완제품	아소트세트_M-I	46,000	28,490
완제품	해피스프링_1호	48,000	31,130
완제품	디어유_1호	50,000	32,450
완제품	밀크레이프_1호 (예약전용)	54,000	34,760
완제품	후레즈티아라_2호 (예약전용)	57,000	36,960
완제품	해피스프링_2호 (예약전용)	59,000	38,280
완제품	HAPPYBIRTHDAY (예약전용)	62,000	40,150
완제품	아소트세트_M-III	68,000	42,130
완제품	아소트세트_M-IV	68,000	42,130
완제품	프리미엄구움과자세트	99,000	59,400
완제품	프리미엄구움과자세트-II	120,000	66,000
카페메뉴	달고나우유	4,600	0
카페메뉴	러블리베리 에이드_G	6,000	0
카페메뉴	러블리베리 에이드_R	5,500	0
카페메뉴	레드엘더베리티_G	4,800	0
카페메뉴	레드엘더베리티_R	4,300	0
카페메뉴	레드오렌지	4,000	0
카페메뉴	레몬라임에이드	6,000	0
카페메뉴	레몬아이스티	5,000	0
카페메뉴	레몬티_G	5,500	0
카페메뉴	레몬티_R	5,000	0
카페메뉴	루이보스 밀크티	6,500	0
카페메뉴	루이보스슈가플럼	4,800	0
카페메뉴	리얼딥초콜렛_G	6,500	0
		L	

카페메뉴	리얼딥초콜렛_R	5,500	0
카페메뉴	리얼초코슈앤치노_G	6,300	0
카페메뉴	리얼초코슈앤치노_R	5,800	0
카페메뉴	말차 초코 크림 라떼_G	6,500	0
카페메뉴	말차 초코 크림 라떼_R	5,500	0
카페메뉴	말차레몬 에이드_G	6,500	0
카페메뉴	망고 슈앤치노_G	6,300	0
카페메뉴	망고 슈앤치노_R	5,800	0
카페메뉴	망고 요거트 슈앤치노_G	6,300	0
카페메뉴	망고 요거트 슈앤치노_R	5,800	0
카페메뉴	민트초콜렛_G	6,500	0
카페메뉴	민트초콜렛_R	5,500	0
카페메뉴	밀크티_흑당추가	500	0
카페메뉴	바닐라라떼	5,300	0
카페메뉴	바질토마토에이드	6,500	0
카페메뉴	백향과티_G	5,500	0
카페메뉴	백향과티_R	5,000	0
카페메뉴	버터쿠키아인슈페너_G	6,500	0
카페메뉴	버터쿠키아인슈페너_R	5,500	0
카페메뉴	베리베리에이드	6,000	0
카페메뉴	석류 에이드_G	6,500	0
카페메뉴	선라이즈 에이드_G	6,000	0
카페메뉴	선라이즈 에이드_R	5,500	0
카페메뉴	솔티카라멜크림라떼_G	6,500	0
카페메뉴	솔티카라멜크림라떼_R	5,500	0
카페메뉴	스트로베리 슈앤치노_G	6,300	0
		<u>l</u>	l L

카페메뉴	스트로베리 슈앤치노_R	5,800	0
카페메뉴	스트로베리 요거트 슈앤치노_G	6,300	0
카페메뉴	스트로베리 요거트 스무디_R	5,800	0
카페메뉴	아메리카노_G	4,300	0
카페메뉴	아메리카노_R	3,800	0
카페메뉴	아이스크림_플레인_컵	4,500	0
카페메뉴	아이스크림_플레인_콘	4,500	0
카페메뉴	어썸망고 에이드_G	6,000	0
카페메뉴	어썸망고 에이드_R	5,500	0
카페메뉴	어썸망고 에이드_송도	6,500	0
카페메뉴	얼그레이_G	4,800	0
카페메뉴	얼그레이_R	4,300	0
카페메뉴	에스프레소	3,700	0
카페메뉴	에스프레소 슈앤치노_G	6,300	0
카페메뉴	에스프레소 슈앤치노_R	5,800	0
카페메뉴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4,000	0
카페메뉴	자몽 에이드_G	6,500	0
카페메뉴	자몽티_G	5,500	0
카페메뉴	자몽티_R	5,000	0
카페메뉴	제주그린티라떼_G	6,500	0
카페메뉴	제주그린티라떼_R	5,500	0
카페메뉴	제주그린티슈앤치노_G	6,300	0
카페메뉴	제주그린티슈앤치노_R	5,800	0
카페메뉴	카라멜 넛 라떼_G	5,800	0
카페메뉴	카라멜 넛 라떼_R	4,800	0
카페메뉴	카라멜마끼아또	5,500	0
		l .	

카페메뉴	카페라떼_G	5,200	0
카페메뉴	카페모카_G	5,500	0
카페메뉴	카페모카_R	5,000	0
카페메뉴	카푸치노_G	5,500	0
카페메뉴	카푸치노_R	5,000	0
카페메뉴	캐모마일_G	4,800	0
카페메뉴	캐모마일_R	4,300	0
카페메뉴	코코아	4,500	0
카페메뉴	콜드브루 돌체라떼_G	5,500	0
카페메뉴	콜드브루 돌체라떼_R	5,000	0
카페메뉴	콜드브루 라떼_G	5,200	0
카페메뉴	콜드브루 라떼_R	4,500	0
카페메뉴	콜드브루_G	4,700	0
카페메뉴	콜드브루_R	4,200	0
카페메뉴	크리미바닐라라떼_G	6,500	0
카페메뉴	크리미바닐라라떼_R	5,500	0 00001
카페메뉴	키위 레몬티_G	5,500	0
카페메뉴	키위 레몬티_R	5,000	0
카페메뉴	키위레몬 에이드_G	6,500	0
카페메뉴	토피넛라떼_G	5,800	0
카페메뉴	토피넛라떼_R	4,800	0
카페메뉴	토핑용 아이스크림	2,000	0
카페메뉴	패션후르츠 에이드_G	6,500	0
카페메뉴	페퍼민트_G	4,800	0
카페메뉴	페퍼민트_R	4,300	0
카페메뉴	퓨어리치 에이드_G	6,000	0
		<u>I</u>	

카페메뉴	퓨어리치 에이드_R	5,500	0
카페메뉴	플레인요거트스무디_G	6,300	0
카페메뉴	플레인요거트스무디_R	5,800	0
카페메뉴	피치아이스티	5,000	0
카페메뉴	핑크자몽에이드	6,000	0
카페메뉴	핑크피치 콜드브루라떼_G	5,000	0
카페메뉴	핑크피치 콜드브루라떼_R	4,500	0
카페메뉴	핸드드립	5,500	0
카페메뉴	흑임자라떼_G(ICE)	6,500	0
카페메뉴	흑임자라떼_R(ICE)	5,500	0



별첨 [3] : 가맹점 개시를 위한 필요물품 목록_상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